

建築과 都市計劃

(規模計劃과 地域地区制)

尹定燮

(서울대학교 工科大学教授)

建築과 都市計劃은 여러가지側面에서 原則의 類似性이 있음은 우리가 既知의 事實이며, 예컨대 建築設計와 都市設計나 建築計劃이나 都市計劃等의 原則은 다루는 規模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接近方法이나 設計計劃過程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두가지側面에서 建築과 都市計劃의 連繫性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規模計劃(Programming)의 側面에서고 둘째는 法規定의 側面으로 크게 区分하여 論하여 보고자 한다.

1. 規模計劃(Programming)

建築施設이나 都市公共施設의 將來需要推定과 適正規模 즉 原單位基準設定을 우리는 規模計劃이라 하거니와 이같은 推定 및 設定에 앞서 우리는 먼저 建築施設이나 都市公共施設의 性格을 紛明하고, 둘째로 將次計劃年度의 使用者나 市民의 必要度와 慾求度(needs and wants)에 상응하는 建築物이나 公共施設의 量的 基準을 推定하는 順序를 밟아야 한다.

원래 建築施設이란 建築主의 要求와 使用者의 需要에 알맞는 建築物을 말하며, 都市公共施設이란 市民 혹은 大多數市民을 위한 政府의 對民奉仕를 物理的施設로 나타낸 것으로 예컨대 都市內의 土地, 都市計劃施設등이 이것들이다.

이들은 都市生活의 重要한 構成要素들이며, 都市生活의 質을 좌우하는 施設들인 것이다. 어느 施設은 日日常生活에 필하고도 충분한 条件이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住宅, 上水道施設등이 그것이며, 또 어느施設은 市民의 教育 또는 文化的 生活을 위하여 所望스러운 것들도 있다. 예컨대 圖書館, 博物館, 美術館 등이다.

建築施設중에서 公共性을 지니지 않는 建築物 즉 주로 民間에 의하여 所有되는 것도 있기는 하나, 한편 그것이 建築施設이건 一般公共施設이건 간에 그 施設이 公共性

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公共 혹은 政府에 의하여 所有되고 公共을 위하여 設置되는 것이 都市公共施設인 것이다.

都市公共施設을 基本施設과 補助施設로 分類한다면 公營住宅, 上水道 등은 前者로서 갈수록 要求量이 늘어 날 것이고, 保健所나 大学施設등은 后者로서 주로 関心度가 높은 市民들에 의해서 要求되게 된다. 公共部門에 대한 投資需要가 갈수록 增大되는 実情이므로 建築施設을 포함한 公共施設의 合理的計劃이 가장 重要하다. 따라서 建築計劃이나 都市計劃立案者は 광범위한 公共施設의 必要度, 優先順位와 原單位基準을 決定하는데 決定的役割을 하여야 한다.

둘째로, 都市公共施設의 規模計劃을樹立하는데 있어서 原單位는 크게 두가지의 基準으로 分類할 수 있다. 즉 하나는 都市計劃에서 地域地区計劃上의 人口, 密度등에 따른 適正規模의 土地單位基準이고, 다른 하나는 都市公共施設과 建築施設에 대한 需要度에 따라 施設單位基準을 정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의 原單位基準은 각各 人口, 經濟成長率, 公共의 慾求變化등에 根拠를 두고 算定되는 物理的基準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세가지 变数의 函数로 推定되는 原單位 推定에서는 세가지 变数가 모두 推定值가 되며 그중에서도 특히 公共의 慾求推定이란 극히 質的問題로서 生活樣式의 變化, 生活水準의 向上등 時代에 따라 變遷하는 것이므로 이를 数量化(Quantification)하기란 難点이 많다 하겠다.

결국 이같은 原單位 基準과 이에 따른 規模計劃은 土地 또는 施設과 人口와의 相關係數로 얻어지는 適正規模로 具體化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經濟規模나 人口增加趨勢로 볼 때, 最小規模(Minimum or adequate)를 1次의으로 策定하고 그후에 適正規模(Qoptimum or desirable)水準을 指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이같은 基準值가 策定되어 建築施設이나 都市公共施設의 規模計劃을 우리나라 実情에 맞게 合理的이고 科學的으

로樹立한다면 建築計画 및 都市基本計樹立과 이에 따른 各施設計劃樹立過程에서 規模 및 特性別 施設基準作成에 中요한 資料가 될 수 있다. 다만 最小規模와 適正規模와의 偏差에 대한 計劃家의 見解差나 혹은 最小規模에 대한 妥當性 與否등은 各者의 判斷에 달린 것이겠으나一般的으로 그 平均值를 各 施設別로 設定하는 것이 좋겠다.

2. 原单位 設定

規模計画은 各施設의 原单位 設定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建築施設이나 都市公共施設의 原单位란 規模計画을 위하여 그施設의 使用者와 土地面積, 使用者와 施設面積, 占有人口에 대한 建築施設의 바닥面積, 施設比率, 施設의 所要數等의 指標(Index)로서 表示하게 되는 것이다.

또 各種施設의 原单位를 論하기에 앞서 우선 다음과 같은 原則을 정하기로 한다.

① 將來原单位 推定方法에 있어서는 過去(최소 10年間)의 趨勢線(實際值)을 統計資料에 依拠 作成하고 將來計画目標年度까지 回歸方程式에 따라 延長시키는 方法을 쓸것. 다만, 이때 回歸方程式은 最小自乘法 1次式과 2次式의 두가지 方式을 택하여 그 平均值를 잡도록 할것 또 建築施設의 原单位 推定은 이같은 方式에서 얻어진 傾向值을, 建築物의 占有人口가 内部空間에서 發生 시키는 各種活動(Activity)과 動線 및 人間의 生理的 要求에 따른 日照量, 採光의 照度, 換氣量이나 所要熱量등의 建築計画原論의 側面에서 檢討된 所要空間의 値과 対照시켜서 適正值를 잡도록 한다.

② 建築施設의 경우는 外國에서 이미 發表된 原单位(예전에 住宅에서는 世界保健機構의 Cologne基準)를 參考로 하고, 都市公共施設의 경우는 外國의 類似한 人口規模와 GDP를 가진 都市의 公共施設 原单位를 參考로 하여 計画都市의 都市計画施設의 原单位를 規範的(Normative)으로 判断할 것.

上記의 두가지 方法에서 얻어진 結果值를 逆算하는 方法으로는,

③ 当該施設을 使用하는 使用者의 活動을 감안하여 그活動을 営為하기 위한 所要空間을 推定하여, 이미 建築施設에서도 言及했듯이 使用者의 保健衛生狀態를 正常的으로 유지할 수 있는 空間의 3次元的 容積(단위·m³)을 計算하여 여기서 2次元의 바닥面積을 算出하는 方法이 있다. 다만 이 것은 建築施設의 原单位計算에 특히適用된다.

이상 세가지 方法中 특히 ①의 方法에서는 基準年度

의 그 都市의 GDP와 目標年度의 그 都市의 GDP 와의 倍数比率을 變數로 다음과 같은 一般式에 의하여 推定한다.

回歸方程式 1次式 : $Y = a + bx$

여기서 a, b는 联立方程式에 따라 計算되는 傾向值이고, 是 實際值로서 이들의 偏差를 最小로 줄이도록 微分함으로서 Y의 値을 求한다. 또 x는 GDP의 倍数比率 혹은 累年数가 된다

그리고 原单位算出에서 우리나라의 法規에서 특히 施設規制關係中 特殊建築物의 規制關係를 보면 学校施設設備基準會 등에 当該施設의 原单位가 規定된 바 있다. 이들의 算出根拠가 무엇인가는 且置하더라도 參考資料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原单位設定에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点이 提起될 수 있음을 여기서 附言해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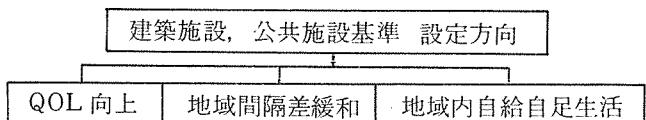
1項에서도 약간 言及한 바 있지만 都市公共施設이나 建築施設의 原单位란 그 基準設定이 市民 혹은 人間生活의 質的側面에서의 必要度와 慾求度에 맞추어 필요한 施設의 量的基準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原unit 설정에는 質을決定하는 計劃의 目標가 于先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適正規模가 정해져야 함으로 크게 区分하여 두가지側面 즉 計劃的側面(Software Aspect)와 工學的側面(Hardware Aspect)이 있다 하겠다. 곧 前者は 質의 目標이고 后者は 量의 目標인 原unit인 것이다. 그러나 質의 目標를 数量化하여 量의 目標로 變移시키는 것은 質의 目標의 数量化가 어려운데다 여기에 따르는 量의 基準도 多樣하여一律의으로 常数로서 하나만의 基準을選定하는데 問題点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原unit 설정의 두가지側面에 대하여 그 過程을 論하고 上記한 바와 같은 問題point에 대하여도 言及하고자 한다.

먼저 質的側面 즉, 어느 施設에 대한 計劃目標를 어디에 두느냐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 目標設定(goal setting)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目標設定을 確定하기 전에 다음의 計劃의前提条件 즉 必要度와 慾求度(needs and wants)를 經濟的要因, 社会的要因과 公共福祉의 要因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市民의 價値觀과 理念에서 計劃目標를 設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市民의 價値觀과 理念의 数量化란 상당히 어려운 作業에 속한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將來推定이 이루어진 다음, 우리의 命題인 施設의 基準設定段階로 옮기게 된다.

다음은 앞의 計劃의前提条件에 의한 目標設定의 過程을 表示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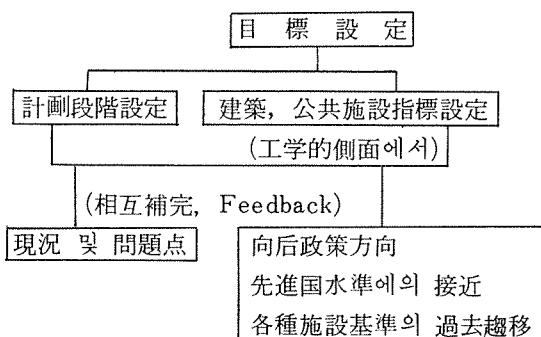
목표設定 過程 :



이 같은 計劃의 前提条件과 目標設定이 成案되면, 計劃段階로 들어 가게 되는데 먼저 施設의 확실한 概念把握을 위하여 施設의 定義를 내리고 또 施設의 大分類(住居施設等), 中分類(单独住宅等), 細分類(单独住宅, 公館等)를 하되, 앞으로 갈수록 多樣해질 建築施設이나 都市公共施設의 種類에 對備하여 가능하면 이들의 分類法을 記号式(coding system)에 의거하도록 하고, 예컨대 前記 住居施設의 경우 大分類, 中分類, 細分類에 각각 ○, ○○, ○○○의 記号를 부쳐 分類한다. 이는 都市生活의 多樣化, 複合化에 對備하여 施設種類의 增加에 對備하고, 原單位 推定에서도 類似施設의 系列化와 原單位의 同質性을 把握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計劃의 첫段階가 紛明되면 다음에 本計劃段階로 들어 가게 된다.

本計劃段階 :



다음段階에서는 이들을 綜合하여 計劃段階별로 各種施設의 質的 目標도 設定되게 된다.

以上이 原單位 設定의 計劃的 側面인데 이들을 数量化하는데는 여러가지 推定值가 쓰이기 마련이고 따라서 그 값의 信頼度(reliability)를 높이는 方向으로 仮定条件의 選定과 判断이 要求된다.

다음은 原單位 設定의 工学的 側面, 即 量的 基準設定에 대하여 알아 본다.

原單位의 量的基準設定은 그 施設의 規模計劃(Programming)을 하기 위한 原單位 基準值인 것이다.

이제 規模計劃에 있어서 施設利用과 相關關係가 있는 施設利用人口의 推定이 끝나고 다음 施設의 適正規模 推定의 過程은一般的으로 建築主 혹은 都市公共施設의 경우는 地方自治團體의 施設의 經營上의 問題, 工事費의 問題와, 使用者 또는 市民의 要求度의 相關關係의 決定段階로 넘어 가게 된다. 여기서는 前者가 一但 정해졌다는 仮定아래 后者의 要求度로 책크할 경우를 생각한다.

① 같은 種類의 施設에 대한 単位面積當需要量을 推定할 것.

② 当該施設이 갖는 地域의 넓이와 施設選択率을 推定할 것, 다시 말하면 サービス圈에 의한 当該施設의 需要

量을 推定할 것.

③ 같은 種類의 施設利用形態에 의한 需要가 나타나는 方向을 推定할 것.

上記의 세 가지 事項을 간단히 説明하면, ①에서 같은 種類의 施設에 대한 単位面積當需要量이란 예컨대 官公署나 빌딩에서는 바닥面積當公務員이나 事務員數를 말한다. 이때에는 곧 利用單位와 利用階層을 求해야 된다는 말이 된다. 官公署 빌딩에 대하여 말한다면 利用單位는 公務員, 利用人口階層은 제3차 產業人口가 된다. 또 日常生活上 필요한 都市市場에서는 利用人口階層은 그 都市內의 全世帯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距離의 인 制約, 經濟의 인 制約에 따라 潜在化되어 있는 需要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에 있어서는 各種의 調査로 부터 施設 特히 地域의 公共施設은 어느 圈域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어느 地点에 있어서의 需要가 어떤 比率로 当該施設에 의하여 充足되어 있는 가는 첫째 施設로 부터의 心理的 距離 둘째 施設이 지닌 魅力度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생각된다.

施設密度가 過小한 곳에서는 그 需要가 充足되지 않은 채 残存될 수도 있다.

이것을 要約해 말하면 施設의 總量은 圈域의 距離와 人口密度의 函数임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現行 建築과 都市計劃法 体制의 改編 (土地利用의 側面)

우리나라의 既存法에서 特히 土地利用 関係 規制를 첫째 法의 行政的 側面과 둘째 計劃的 側面에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法의 行政的 側面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土地利用의 分類는 地域과 地区로 2大別되고 있으며 地域은 都市計劃上 필요로 하는 都市計劃区域에 全国的으로同一한 基本的 土地利用 即 住居, 商業, 工業地域 및 綠地地域으로 指定하게 되어 있다. 이같이 4大 基本地域으로 区分하는 것은 日本이나 美国의 경우도 같다 하겠으나 다만 美国에서는 綠地地域은 指定하지 않고 市街化 区域内에서는 都市公園이나 休養地区(recreation uses)만 指定하며 우리나라의 生產綠地 地域이나 自然綠地 地域은 非市街化 区域内에 포함시킬 뿐이다. 日本의 경우도 住居地域, 商業地域, 工業地域과 特別地域으로 分類하고 各地域을 다시 地区로 細分하고 있으나 綠地地域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綠地地域을 市街化 区域에서 除斥하고, 市街化 区域에는 都市公園이나 休養地区만을 指定하고 不然이면 非市街化 区域에 綠地地域을 編入시켜 지금보다 強化된 建築制限을 加함으로서 都市計劃的 側面에서 市街化 区域과 非市街化 区域을 명확히 区分하는데도 움이 되는 것이다. 한편 地区는 地域의 補完的 役割을

하는 것으로 각都市의 特性에 따라 보다 純化된 環境을 필요로 할 때, 그目的에 맞추어 教育 및 研究地区, 空港, 業務, 美觀 등의 地区로 指定되고 있는데 地区는 地域과 같이 用途에 依한 建築物의 建築制限을 加하는 外에 地方自治團體의 条例로 定하는 事項으로 建築物의 容積制限을 加하는 地区로는 風致地区, 美觀地区, 아파트地区, 駐車場整備地区와 空地地区등이 있다. 이러한 地区들의 實제 運營內容을 살펴보면 한例로 風致地区는 住居地域에 重複指定되므로 住居地域內의 用途制限을 아울러 받고, 風致地区内의 容積制限은 建築条例에 따르게 된다. 이와 반면에 教育 및 研究地区의 경우는 이 地区에 속하는 地域(住居地域等)의 容積制限을 받고 用途制限은 이 地区의 用途制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地区를 用途, 容積制限의 側面에서 고찰해 보면 ①건축물의 用途, 容積制限 두 가지를 다 規定하고 있는 地区 ②用途制限만을 規定하고 容積制限을 当該地域에 따르는 地区 ③容積制限만을 規定하고 用途制限은 当該地域에 따르는 경우 등 多樣하다. 美国의 경우 地域은 同一한 性格의 用途地区를 總括하는 概念上의 用語일 뿐이며 實제 存在하지 않고 地区가 地域制의 構成要素로써 극히 細分되어 純化된 地区에서 用途 맥 容積制限을 同時に 規定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域과 地区를 두어 用途 및 容積制限을 양쪽에서 規定하는 우리나라 地域地区制의 合理性 如否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나라의 都市計劃法에는 地域, 地区 또는 特殊目的의 区域을 指定하고 그 指定目的, 地域地区別 用途制限 또는 그 施行内容등을 規定하고 있으나 垦地条件, 容積率, 建弊率 등의 規定과 地域地区内에서의 建築物의 制限등에 関한 規定등은 建築法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建築法의 集團規定에 該當되는 部分을 都市計劃法의 地域地区指定에 관한 規定과 別途로 分離시켜 地域地区制法(假稱)으로 独立시키므로서 새로운 土地利用分類와 함께 뉘어서 일목 요연하게 規定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現行 建築法의 集團規定, 規制方法의 禁止事項을 위주로 다루는 体制(negative control) 즉 “할 수 없다”는 規定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美国의 例를 보면 許容事項을 위주로 다루는 体制(positive control) 즉 “할 수 있다”는 規定뿐이다. 이것은 地域地区의 細分化와 더불어 되는 用途를 정확히 規定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地域地区의 純化를 위해서 앞으로 是正해 나가야할 点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建築物이건 별도의 街路計劃에 의해造成된 垦地上에 建築되거나 建築이면 一團地造成事業으로 綜合의 인 開發計劃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建築行為가 시작되기 전에 開發行為가先行되어야 하며 建築許可가 發給되기 전에 開發行為에 대한 開發權

(development right) 許可가 發給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法에 開發許可制度에 관한 規定이 없으나 美國을 비롯해 英国, 日本에서는 이 制度가 施行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서 비록 民間建築이라 할지라도 그 建築行為가 全體 都市開發과 符合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計劃의 側面에서 본 土地利用計劃에서 고려할 事項은 ①都市의 自然的 經濟的 社会的 現況把握과 함께 既存都市의 構造와 現況의 把握, ②將來 土地空間의 需要推定, ③土地利用基本構想과 相互關係등을 고려하여 立地選定등의 順序로 計劃하게 되며 都市施設集団의 配置와 配列을 將來에 걸쳐서 가장合理的이고 健全한 形態로 計劃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된 土地利用計劃이라도 이 計劃을 實行할 수 있는 制度의 裝置라던가 法의 根拠가 없으면 無用之物이 되는 것이다. 地域地区制는 土地의 用途에 관한合理的인 規制이다. 즉 公共의 健康과 福祉, 安全과 便益을 保護할 目的으로 政策의 인 힘을 行使하여 特定土地 및 建物의 用途를 制限하거나 形態, 容積, 建弊率등을 制限함으로써 이를 制度化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都市綜合計劃에 나타난 計劃의目標를 施行하는 方法으로 土地利用을 制限하여 法의 根拠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地域地区制는 計劃家가 더욱 努력을 기울여 制作하고 使用者の 意見를 図媒하는 것이 要望된다.

우리나라 既存法上의 地域地区의 分類는 이를 改正하여 異質的 施設의 分離에서 얻어지는 地域純化의 利益과 同質的 施設의 集團化로 얻어지는 集積의 利益을 폐하고 同時に 土地의 高度利用과 都市綜合計劃과의 符合性을 위하여 더욱 細分되어야 한다. 한例로 住居地域의 경우 現行과 같이 住居專用地域, 住居地域, 準住居住地域으로만 分類할 것이 아니라 住居地域에 함께 許容될 수 있는 他用途의 建築種類에 의해서나, 혹은 最小垦地面積이나 둘의 要求, 住宅의 戶數密度(accommodation density) 등에 따라 住居地域을 더욱 細分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美国 뉴욕의 경우만 보아도 住居地域이 記号体系에 의하여 10가지 이상으로 分類되어 있다. 商業地域도 마찬가지로 細分할 수 있으며, 工業地域도 製造業의 行為基準(performance standards) 즉 소음, 냄새, 열, 진동, 매연, 먼지, 섭광등의 基準值에 의해 더욱 細分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住居地域에서는 人口密度에 대한 規定이 요청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法에 表示된 바 없으나, 美国의 경우에는 각 住居地区에 戶數密度(house/acre), 室數密度(rooms/acre)의 規定으로 間接의 人口密度를 規制하고 있으나 예전에 室數密度에 室當 占有 人口數를 곱하면 곧 人口密度가 되는 것이다.